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일반임기제 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장관 정책 보좌인력(3·4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네트워크정책실”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명을”을 “3명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명은”을 “2명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미래전략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제14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제14조제3항제32호 중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방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에 관한 사항

제36조제2항 중 “73명을”을 “74명을”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9"을 "795"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6"으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5"로 하고, 일반직 계 "780"를 "7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49"를 "754"로 한다.

별표 5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항제6호 · 제17호 · 제18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9호 · 제11호 ·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운영지원과 · 연구개발정책실 · 미래인재정책국 · 인공지능정책실 · 정보통신정책실 · <u>네트워크정책실</u> · 전파정책국 및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 ----- ----- - <u>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u>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과학기술 · 인공지능정책협력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u>2명</u> 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② ----- ----- ----- -- <u>3명</u> 을 ----- -----.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u>1명</u> 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 ----- ----- <u>2명</u> 은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생 략)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신 설>

23. ~ 81.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략)

3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3. ~ 97. (생략)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22. (현행과 같음)

22의2. 미래전략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3. ~ 81.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1. (현행과 같음)

32. -----
----- 예방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2의2.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에 관한 사항

33. ~ 97.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
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다)은 73명을, 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
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제41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
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
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
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에 둔다.

② -----

----- 74명을 -----

-----.

제4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2027년 12월 31일까
지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9</u>	<u>795</u>	+6
·	·	·	
·	·	·	
별정직 계	<u>5</u>	<u>6</u>	+1
·	·	·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u>4</u>	<u>5</u>	+1
일반직 계	<u>780</u>	<u>785</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49</u>	<u>754</u>	+5
·	·	·	

[별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1. 삭제 <2023. 12. 19.>

2. 제41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	---

일반직 계	1
-------	---

5급	1
----	---

3. 삭제 <2025. 10. 1.>

4. 삭제 <2025. 2. 25.>

5. 삭제 <2024. 3. 2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